#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이상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35

발의연월일: 2024. 6. 19.

발 의 자:이상휘・우재준・김정재

고동진 • 임이자 • 최형두

구자근 · 서일준 · 이헌승

김태호 · 이종배 · 박성훈

박대출 · 강민국 · 정점식

이만희 의원(16인)

## 제안이유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와 산업단지 내 화재발생, 석유누출, 유해화학물질 발생에 따른 지속적이 며 광범위한 건강·환경·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음. 특히, 국가산업 단지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질병 문제는 오염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 어 발병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음.

그런데 현행 환경 관련 보전법으로는 국가산업단지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관리 및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국 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주 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노후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노후 국가산업단

지의 유지보수 및 지역주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 하고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주변지역등에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에 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대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바. 입주업체는 해당 입주업체가 위치한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

람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용도를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아. 환경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주변영향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자.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등의 유통량·취급량·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업체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성분 및 사용량·제조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차. 환경부장관은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22조).
- 환경부장관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이 입주업체의 환경
  오염물질 처리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환경 오염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여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 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노후 국가산업단지"란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를 말한다)로 지정 후 30년 이상 경과한 국가산업단지를 말한다.
- 2. "주변지역"이란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3. "주변영향지역"이란 제1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 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4. "입주업체"란 노후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의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 5.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과 주변영향지역 (이하 "주변지역등"이라 한다)의 주민과 노후 국가산업단지 입주업 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국 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생활향상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 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의 지역주민 지원과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2장 주변지역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등

- 제6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 단지 주변지역등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 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주변지역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 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 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주변지역등을 관할하는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에 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주거·문화· 환경·의료·복지 등에 대한 지원사업
  - 2. 주변지역등의 안전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방법·대상·시행기간 등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료시설의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등의 지방자 치단체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주변지역등의 주민 편익시설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등에 공공편익시설 및 체육시 설 등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이주대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제13조(매수청구)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제14조(지역상생을 위한 노력) 입주업체는 지역상생을 위하여 해당 입 주업체가 위치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기업의 우대) 입주업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주업체가 위치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장 기금의 설치 등

-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업체의 출연금
  -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 1. 주변지역등의 주민 건강지원
  - 2. 의료시설의 설치

- 3. 주변지역등의 주민 편익시설 설치
- 4. 그 밖에 주변지역등의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장 주변지역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관리

- 제18조(주변지역등 지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을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건강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지정·고시하려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건강상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 제19조(유해화학물질등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및 석유화학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노후 국가산업단지에서 유해화학물질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유해화학물질등의유통량・취급량・배출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의 유통량・취급량・

배출량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등의 유통량·취급량·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에 이와 관련한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0조(입주업체의 자료 제출) 입주업체는 자신이 사용·제조하는 유 해화학물질등의 성분 및 사용량·제조량, 배출 물질의 성분 및 배출 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분기마다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환경상 영향조사) 환경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등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조사(이하 "환경상영향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22조(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근로자 및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에 대한 역학조사(이하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 근로자 및 주민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3조(주민의 알권리 보장)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 환경상 영향조사 및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입주업체가 사용·제조하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성분 및 사용량·제조량·유통량·배출량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24조(주민의 감시)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등의 주민에게 노후 국가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환경오염물질 처리 및 배출과정 등을 감시하 게 할 수 있다.
- 제25조(환경오염 방지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진·방풍 등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필요한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7조(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5장 보칙

- 제28조(벌칙) 입주업체가 제20조를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